

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베트남공모주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]
2. 변경시행일 : 2020.10.05
3. 주요 정정사항 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[신탁계약서] : 펀드기준가격 산정 프로세스 전면 개편에 따른 매입 기준가격 적용일 변경

정정 전	정정 후
<p>제25조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<u>영업일의 다음 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<단서 생략>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	<p>제25조(판매가격)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투자신탁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자금을 납입한 <u>영업일부터 제3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,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(토요일은 제외한다)로 한다. <단서 현행과 같음></p> <p>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투자신탁의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투자신탁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<u>제4영업일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.</p>
<신 설>	부 칙
	이 신탁계약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<끝>.